

2024년 2월 1일

Preview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남긴 댓글이나 후기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고객후기는 구매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질의 후기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기업의 영업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고객 후기를 업무에 활용함에 있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타사의 후기를 자신의 영업과 관련있는 것처럼 무단 활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본 뉴스레터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댓글 및 후기의 적법한 활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리걸 이슈 Legal Issues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적법성 판단기준

웹사이트 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 어디까지 활용가능할까

## 민후 소식 Minwho News

법무법인 민후, SBS BIZ 출연 - 'AI 법률자문 강세 로펌'으로 소개

사업장 내 안전사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형사 사건서 불기소 결정 이끌어

## 리걸이슈

##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적법성 판단기준

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몰래 수업현장을 녹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전화 대화 또는 오프라인 발언의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려면, ① '타인 간의 대화'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은 불법이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는 일방의 녹음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법인의 경우 그 소속 직원과 고객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때 대화 일방은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만일 3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녹음을 한다면 다른 두 사람의 대화는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그러나 제3자가 대화자의 일방의 동의만 얻고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이는 위법하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②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야 불법인바, 따라서 공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대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범죄 채증을 위해서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이미 언급한 대법원 사례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원심은 교사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학부모는 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양주시청 공무원의 자신의 사무공간에서 한 발언을 가청거리 내의 칸막이 밖의 다른 사람이 이 대화를 녹음한 사례이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가청거리 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대화 녹음은 쉬워졌고 그래서인지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녹음파일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은바, 자신을 위해서 채증하는 과정이 자칫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리걸이슈

### 웹사이트 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 어디까지 활용가능할까

특정한 분야를 주제로 한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보면, 회원들이 남긴 댓글, 후기가 상당히 축적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쇼핑몰의 경우 구입회원들이 남긴 댓글과 후기가 쇼핑몰의 신뢰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는 댓글과 후기를 남긴 회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댓글과 후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 신생업체에서는 이러한 댓글과 후기를 타업체로부터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로, 몇 년 전 대학생 커뮤니티의 강의 후기를 무단으로 크롤링해간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4  
E. yangjy@minwho.kr

이처럼 타사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의 댓글 또는 후기를 무단으로 복제해가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무단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표시광고법 상 허위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회원들의 댓글과 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 내 사이트에서 내가 모은 댓글 또는 후기에 대하여도 활용 상 제한이 있을까.

회원의 게시물 및 댓글의 경우 짧은 느낌을 표현 문구거나, 단순한 감탄문, 욕설, 또는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에 불과한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회원 나름대로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요즘 트렌드가 상당히 상세하게 댓글 또는 후기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작성되는 대부분의 댓글 또는 후기는 저작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댓글 또는 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회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방법,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제46조). 이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반드시 개별적인 동의서에 의할 필요는 없고, 회원가입시 제시되는 이용약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2019. 3. 15.자 보도자료)」에서, 구글의 '이용약관 중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이라고 판단하였고,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용약관을 통하여 회원이 남긴 댓글 또는 후기를 이용하려면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이용허락 또는 이용약관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없던 시기에 작성된 댓글 또는 후기의 사용 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실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판단하는데 일응의 기준이 되므로, 약관규제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저작물 동의조항이 담긴 이용약관의 시행 이전에 게시된 댓글 또는 후기에 대하여는 저작물 이용동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 적용 전 댓글 또는 후기를 활용하려는 경우, 저작자인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댓글 또는 후기는 기업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으로서, 타사의 댓글 또는 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광고행위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식으로 해당 자료를 양도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타사의 댓글 또는 후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사 웹사이트에서 모은 댓글 또는 후기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인 회원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개별동의서 또는 이용약관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용약관에 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이용을 제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댓글과 후기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민후 소식

### 법무법인 민후, SBS BIZ 출연 - 'AI 법률자문 강제 로펌'으로 소개

AI 기술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관련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성장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사업을 예정한 기업의 경우, 신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발생 여부 등 법률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SBS BIZ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에 출연해 AI 기술 활용에 따른 법률문제와 리스크 예방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예정한 기업은 저작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이나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경우, 기술상 AI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투입된 학습 데이터가 생성 결과물에 반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이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해당 결과물을 온라인 등에 게시할 시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AI를 통한 통화 또는 대화의 녹음하는 경우, AI를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SBS BIZ에 출연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변호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 업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 <관련 링크>

- [법무법인 민후 출연 방송 클립 바로보기](#)

## 민후 소식

## 사업장 내 안전사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형사 사건서 불기소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생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후는 해당 사고가 담당 업무의 책임자가 설비의 올바른 운용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를 벗어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후는 의뢰인이 사고 사업장의 경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극히 제한적임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를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